

의안번호	2207414
의 퇴 인	송기헌의원
회 답 일	2025.2.27.
추계번호	25D056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보훈병원의 진료비 감면을 확대하고 위탁병원의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25억 700만원, 2030년 793억 2,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532억 6,100만원(연평균 706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확대(안 제42조제5항)	57,639	60,942	64,434	68,127	72,031	323,173	64,635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확대(안 제42조제7항)	4,868	5,385	5,957	6,589	7,289	30,088	6,018
합계	62,507	66,327	70,391	74,716	79,320	353,261	70,653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42조(진료)	일부 국가유공자(비상이자),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 비율을 60%에서 90%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제5항)	재량규정
2		보상금 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선순위유족으로서 위탁병원 진료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제7항)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42조제5항(보훈병원 감면비율 상향)	○	—
2	제42조제7항(위탁병원 감면대상자 확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의 진료비 감면율(보훈병원)과 진료비 감면대상 연령(위탁병원)을 확대하는 경우, 진료비 지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2]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감면율 현황(비상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가족)

감면대상	보훈병원	위탁병원
재일학도의용군인	면제	60%
무공수훈자	60%	60%
보국수훈자, 4·19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60%	해당 없음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60%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명)	60%(보상금 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75세 이상 선순위유족 1명 한정)

자료: 국가보훈부

- 본 추계에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확대의 추가재정소요 산출 시, 감면 대상 인원, 수진횟수, 감면진료비 단가는 다음의 변수를 적용하여 추정함
 - 대상인원: 감면대상 인원(2024년 기준)에 최근 5년 연평균증가율과 보훈의료 수혜율을 각각 적용
 - 수진횟수: 진료비의 90%를 감면받는 참전유공자의 연평균 수진횟수를 적용
 - 감면단가: 감면진료비 단가(2023년 기준)에 최근 5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
- 본 추계에서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연령 확대의 추가재정소요 산출 시, 신규인원, 수진횟수, 감면진료비 단가는 다음의 변수를 적용하여 추정함
 - 신규인원: 보상금 등을 받는 65세 이상 75세 미만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 인원(2024년 기준)에 최근 5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
 - 수진횟수: 최근 5년 위탁병원 평균 수진횟수를 적용
 - 감면단가: 감면진료비 단가(2023년 기준)에 최근 5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 확대(60%→90%, 안 제42조제5항)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감면진료(60%) 대상 인원에 진료단가 차액과 수진횟수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2024년 기준 보훈병원 감면진료(60%) 대상자 1,204,287명에 연평균 증가율(0.02%)¹⁾과 보훈의료 수혜율(25.2%)²⁾을 각각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감면진료 실인원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보훈병원 감면진료(60%) 대상 인원: 2024~2030년

(단위: 명)

	2024	2026	2027	2028	2029	2030
감면진료 대상인원	1,204,287	1,204,868	1,205,159	1,205,450	1,205,741	1,206,032
보훈의료 수혜율	—	25.2%	25.2%	25.2%	25.2%	25.2%
감면진료 실인원	—	303,627	303,700	303,773	303,847	303,920

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진료(60%) 대상자만 표시한 수치임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결산기준 보훈병원 감면진료비 단가 67,249원에 연평균 증가율(5.71%)³⁾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감면진료비 단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4] 보훈병원 감면진료비 단가: 2023~2030년

(단위: 원)

	2023	2026	2027	2028	2029	2030
60% 감면단가	67,249	79,428	83,960	88,750	93,814	99,166
90% 감면단가	—	119,143	125,940	133,125	140,721	148,749
단가차액	—	39,714	41,980	44,375	46,907	49,583

주: 90% 감면단가는 60% 감면단가에 1.5를 곱하여 산출함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 보훈병원 감면진료(60%) 대상자 현황: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인원	1,306,970	1,309,021	1,305,069	1,304,985	1,308,232	0.02%

주: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등 보훈병원 감면진료(60%) 대상자를 모두 합산한 수치임

2) 보훈의료수혜율 현황: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보훈의료 수혜율	24.3%	24.6%	25.3%	25.5%	26.3%	25.2%

3) 보훈병원 감면진료비(60%) 단가: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감면진료비 단가	53,864	62,974	64,394	66,795	67,249	5.71%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231억 7,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보훈병원 진료감면 확대의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훈 병원	감면진료 인원(a, 명)		303,627	303,700	303,773	303,847	303,920	—
	수진횟수(b, 회)		4.78	4.78	4.78	4.78	4.78	—
	진 료 비	60%감면단가(c, 원)	79,428	83,960	88,750	93,814	99,166	—
		90%감면단가(d, 원)	119,143	125,940	133,125	140,721	148,749	—
		단가차액(e=d-c, 원)	39,714	41,980	44,375	46,907	49,583	—
	추가재정소요 (f=a×b×e, 백만원)		57,639	60,942	64,434	68,127	72,031	323,173

주: 수진횟수는 현재 진료비의 90%를 감면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연평균 수진횟수⁴⁾를 적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연령 하향(75세→65세, 안 제42조제7항)

-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연령의 하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감면진료의 대상으로 추가되는 인원⁵⁾에 감면진료비 단가와 수진횟수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2024년 기준 보상금 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65세 이상 75세 미만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 인원(17,728명)에 연평균 증가율(6.55%)⁵⁾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위탁병원 감면진료의 신규 대상인원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4) 참전유공자(90% 감면진료) 수진횟수 현황: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수진횟수	3.5	3.6	5.1	5.3	6.4	4.78

5)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 현황: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인원	45,420	44,674	50,190	52,836	58,544	6.55%

주: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등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를 모두 합산한 수치임

[표 6] 위탁병원 감면진료 신규 인원: 2024~2030년

(단위: 명)

	2024	2026	2027	2028	2029	2030
신규인원(누적)	17,728	20,127	21,446	22,850	24,347	25,943

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병원 감면진료 신규인원만 표시한 수치임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결산기준 위탁병원 감면진료비 단가 22,756원에 연평균 증가율 (3.81%)⁶⁾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감면진료비 단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7] 위탁병원 감면진료비 단가: 2023~2030년

(단위: 원)

	2023	2026	2027	2028	2029	2030
감면진료 단가	22,756	25,461	26,432	27,441	28,488	29,574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위탁병원 감면진료의 대상 연령을 하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00억 8,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8]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연령 하향의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탁 병원	감면진료 신규인원(a, 명)	20,127	21,446	22,850	24,347	25,943	—
	수진횟수(b, 회)	9.5	9.5	9.5	9.5	9.5	—
	감면진료 단가(c, 원)	25,461	26,432	27,441	28,488	29,574	—
	추가재정소요 ($d=a \times b \times c$, 백만원)	4,868	5,385	5,957	6,589	7,289	30,088

주: 수진횟수는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자의 연평균 수진횟수⁷⁾를 적용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위탁병원 감면진료비 단가: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감면진료비 단가	19,591	21,721	20,261	24,360	22,756	3.81%

7) 위탁병원 수진횟수 현황: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수진횟수	12.1	10.1	8.4	8.3	8.7	9.5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보훈병원의 진료비 감면을 확대하고 위탁병원의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25억 700만원, 2030년 793억 2,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532억 6,100만원(연평균 706억 5,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확대(안 제42조제5항)	57,639	60,942	64,434	68,127	72,031	323,173	64,635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확대(안 제42조제7항)	4,868	5,385	5,957	6,589	7,289	30,088	6,018
합계	62,507	66,327	70,391	74,716	79,320	353,261	70,653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에서 진료대상자 및 진료횟수는 과거 추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